

발표논문

日本における外国仲裁判断の承認と執行

- 中国の仲裁判断の承認と執行に関する判例と
新仲裁法を中心として -

木 棚 照 一 *

〈 목 차 〉

- I. 서 론
- II.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의 판례
- III. 일본의 신 중재법의 제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IV. 결론을 대신하여

* 日本 早稻田大學法學部 教授

I. 서론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妨訴抗辯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례가 판례로 되기 전의 9건에 관하여 개괄해 보면 모두 1980년대 전반의 판결로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 6건(① 대심원 대정 7년 <1981년>4월 15일 제 12민사부판결 민록 24권 865페이지 ② 도오쿄지재소화 34년 <1959년> 8월 20일 판결 하급민수 10권 8화 83페이지 ③ 도오쿄지재소화 34년 <1959년> 10월 23일 판결 하급민수 10권 10호 83페이지 ④ 오사카지재소화 36년 <1961년>11월 27일 판결 해사판례 6권 5호 118페이지 ⑤ 오사카지재소화 58년 <1983년> 4월 22일 판결 판례시보 1232호 138페이지 ⑥ 나고야지재 이치노미야시부소화 62년 <1987년> 2월 26일 판결 판례시보 1090호 146페이지), 나머지 3건은 妨訴抗辯등에 관련되는 것이다. (⑦ 도오쿄지재 소화 28년<1953년> 4월 10일 판결 하급민수 4권 4호 502페이지 ⑧ 오사카지재 소화 34년<1959년>5월 11일 판결 하급민수 10권 5호 970페이지 ⑨ 도오쿄 재소화 44년<1969년>9월 6일 판결 판례시보 506호 73페이지)이다. 그 중 4건이 선박계약이나 선박의 판매계약등 해사관련건이다(판례②③⑤⑦). 그 외에 호텔건설허청계약(판례①), 통조림매매계약(판례④), 종이 짜르는 기계판매대리점계약(판례⑥), TV방송계약(판례⑨)에 관한 분쟁의 중재판정에

관한 것이다. 그 중 3건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및 양자협약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 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 즉 명지23년(1890년)의 구민사소송법 802조, 801조(이런 규정은 평성8년 <1996년>에 새민사소송법이 제정됨으로 하여[공지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로 이름으로 고침)에 의해 적용되었다(판례①⑦⑧). 1927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률”(아래 제네바협약으로 약칭함)을 적용한 것이 1건(판례②), 제네바협약과 일비우호통상항해협약 4조2항을 적용한 것이 3건(판례③④⑥), 1957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아래 뉴욕협약이라고 약칭함)을 적용한 것이 1건(판례⑤)을 적용한 것이 1건(판례⑤)이다.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1987년 4월 22일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일본은 소화27년(1952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했으며 소화36년(1961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뉴욕협약의 적용은 물론 동 협약과 1974년 6월 22일에 효력이 발생한 중일무역협정 8조에 규정한 상사계약에 관한 중재규정관계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한 뉴욕협약7조 1항은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기에 저촉한 부분은 중일무역협정 8조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판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분석해보자.

일본은 제네바협약이나 뉴욕협약에 가입할 때 이런 협약의 규정을 내국법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이런 협약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스스로 집행하는 성질을 띤 규정이고 내국법화하지 않아도 직접 적용되며 게다가 헌법 98조2항의 해석에 의하면 협약 규정은 국내법에 비해 우선적으로 국내법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처럼 국내법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협약의 규정과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확실이나 판례상 이론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올해(2003년) 7월 25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규정을 포함한 신중재법이 제정되었고 평성15년 법률제138호로 공포되었다. 아래 등 법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에 관한 규정 및 그 의의와 특징을 소개한다.

뒷부분에서 개괄하여 결론을 지은다.

II.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의 판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의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 관련 판결은 현재까지 5건으로 공포되었다.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중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한 것이다. 아래 연대 순서별로 판례를 소개하고 정리해 보겠다.

첫 번째로 (1) 오카야마지재평성5년(1993년) 7월 14일 판결, 판례시보 1492호 125페이지, 판례타임즈857호 271페이지 사례, 중국법인 X는 1985년 5월 12일 일본법인Y과 중국에 마대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동 계약의 이행중 XY간에 분쟁이 생기고 양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어 1990년 3월 22일 X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1991년 1월 30일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X는 손해배상으로 2470만엔과 그 이자로 년 이율8퍼센트, Y가 제공한 설비가 합의한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Y는 X가 계약을 체결한 Y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X가 요구한 손해배상과 이자의 지불을 인정했으며 Y가 제공한 설비의 가격조정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X는 뉴욕협약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중재판정의 원본을 중국주오사카총영사관 영사로부터 증명을 받고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본건의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Y는 일본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 제1조 3항의 보류선언을 집행하기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동 원칙에 의하면 일본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집행될

때 적용되는 중국민사소송법 219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집행신청기간을 7개월로 하기에 기간이 넘어 신청한건에 대하여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카야마지재는 뉴욕협약과 중일무역협정이 본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고 중일무역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협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뉴욕협약 및 중일무역협정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는 그 판정을 자주 사용하는 나라에서의 법률에 근거하고 그 이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Y가 말하는 소위 상호주의 근거로 되는 뉴욕협정 1조3항에서 제정한 상호주의는 중재판정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중일무역협정의 전문도 평등호혜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는데 그쳤으며 구체적인 집행절차까지 상호주의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X의 집행판결 요구를 인정했다.

두 번째로 (2)도오꼬지재평성5년 (1993년) 7월 20일 판결, 판례시보1494호 126페이지, 판례타임즈 859호 255페이지 사례, 중국법인 X는 1989년 10월 28일 일본법인 Y과 비디오테이프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중국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

Y는 선불금을 지불했지만 X가 목적물을 선적하지 않아, 1990년 6월 1일 일본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 위약금 및 이자지불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X와 Y간에 합의를 달성하여 중재위원회는 1990년 11월 25일 중재판정을 내려 Y에게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이자 총 71만 5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하였다. X는 본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판결을 요구했다. 도오꼬지재는 일본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했고 중일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뉴욕협약 7조 1항에 의하면 이 협약은 양국간의 합의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일무역협정 8조 4항에 의하면 그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의 법률이 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본의 민사소송법 802조에 규정된 조건에 의해 집행판결의 정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본 중재판정은 절차상, 실체상 어떠한 집행판결의 요건에 모두 족하므로 X의 청구를 인정했다.

세 번째로 (3)도오꼬지재평성6년 (1994년) 1월 27일 판결, 판례타임즈

853호 266페이지, 중국법인 X는 1985년 10월 27일 일본법인 Y와 중국사천성 증경에서 축전지제조브랜드를 1억 600만엔에 구입하는 내용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될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에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었다. Y가 축전지제조브랜드를 넘겨주지 않아 X는 1988년 10월 7일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게 중재를 신청했다. 동 위원회는 1990년 5월 19일 X의 주장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X는 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Y는 ①X는 지불담보(L/G)를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설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실효되었음. ②중재조항에 의하면 중재인 중 한명은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명 모두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전부 중국인이었다는 것 ③X가 경제무역부의 영업성조직으로 판정의 공정성에 신임이 안간다고 주장하였다. 도오쿄지재는 본 안건에 관하여 뉴욕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 협약 4조 1항 a호에 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영사사로부터 인정받은 중재판정서 원본, 이 항 b호에 규정된 중재합의가 있는 계약서 원본 및 각자가 동조 2항에 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부영사사로부터 증명받은 번역문을 제출했고 동 협약 4조에 규정된 적극적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Y가 주장하는 사실 중 ①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②Y의 신청에 관한 중재인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음 ③중재위원회는 동 나라에서 유일한 중재위원회이고 X가 국영회사라는 점만으로 공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X의 청구를 인정했다.

네 번째로 (4)도오쿄지재평정7년(1995년) 8월 19일 판결, 판례타임즈 919호 252페이지. 중국의 국영기업법인 X와건축용자재의 수출입,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일본법인 Y는1989년 2월 21일 중국해남성에서 벽돌제조 합작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중에 본 계약에서 생긴 분쟁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위탁하고 그 중재판정이 최종적으로 양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중재합의를 결정했습니다. X는 Y와 계약을 이행하는데서 분쟁이 생겨 1990년 8월 14일 동 위원회의 후신인 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Y는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고 1992년 2월 6일의 개정에 참가하지 않고 위원회의 개정기일의 연기를 요구할까 하는 조회에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위원회는 1992년 4월 12일 X의 신청을 대체로 허락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X는 뉴욕협약 4조에서 규정한 문서를 중국의 공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본 중재판정의 원본 및 동 나라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증명된 번역문, 원본의 사본을 공정원의 정당한 증명을 받은 중재위탁조례의 등본 및 동 나라주오사카총영사관영사에서 증명한 번역본을 제출하고 집행판결을 청구했다. 벽돌제조공장설립에 필요한 기술은 대만의 A가 갖고 있고,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Y는 X로부터 부탁받고 벽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A가 나중에 투자를 하지 않아 합작회사가 해산하게 되었으므로 본 중재판정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고 본 중재판정에 참여한 중재인으로 인한 판정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도오코지재는 뉴욕협약 3조는 본 협약 4조 아래 결정한 조건하에서 그 중재판정이 많이 사용되는 영역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에 본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중일무역협정 8조에 의하면 그 집행이 요구되는 나라인 일본의 민사소송법 802조 1항에 의해 그 집행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X의 주 영업목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일무역협정 8조에서 말하는 “외국 무역기구”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뉴욕협약 7조 1항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 적용범위의 최대한 넓히는 취지로부터 규정된 것으로 양국간 합의 중 본 협약보다 제한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일본의 민사소송법 801조 2항, 801조 중 뉴욕협약보다 제한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Y의 공정한 중재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중재인의 선거에 관한 규정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중재인 회피의 규정등을 개괄하고 뉴욕협약 제5조 2항 (b)의 내용으로 본 중재안건이 심사절차가 일본의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판결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5)요꼬하마지재평성11년 (1999년) 8월 25일 판결, 판례타임즈 1053호 266페이지, 판례시보1707호 147페이지 사례. 중국 기업법인 X는 일본법인 Y과 1996년 11월 14일, 동년 12월 5일 두 번에 걸쳐 도로동결방지제를 판매하는데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계약의 이행, 특히는 Y의 상품대금의 일부 지불거절로 인한 이행중지로 X는 1997년 8월 20일 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동 중재위원회는 동년 12월 6일 중재판정을 내려, X의 주장을 인정하고 Y에 대한 미지불대금의 지불과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X는 중국주일본대사고나영사로부터 정당하게 증명된 본 중재판정의 판정서 등본, 동 계약서 원본 및 상기사료의 번역문을 제출하여 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Y는 Y의 고객인 A와 B가 직접 X로부터 본 도로동결방지제의 구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X의 합의를 얻고 본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뉴욕협약 5조 1항(b)의 거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꼬하마지재는 중국중재법 19조에 의하면 중재합의는 계약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 계약 해제여부에 관하여 판정할 것도 중재합의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801조 및 802조가 규정한 것은 국내 중재판정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외국중재판정에 관계되는 본 안건에 관해서는 뉴욕협약 혹은 중일무역협정이 적용되지만 뉴욕협약 7조 1항을 보면, 우선 특별법에 관계되는 중일무역협정 8조 4항에 의해 “집행신청을 받은 나라”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제정한 조건”이 적용되고 일본이 가입국으로 된 뉴욕협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뉴욕협약이 제정한 조건뿐이고,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제75조 1항은 중국어를 정식언어로 결정하고 본 계약이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X와 Y간에 중재절차를 중국어로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뉴욕협약 5조 1항(b)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

X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이상의 판례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피고인 일본법인의 중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거부사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협약이나 법률규정에 따른 이러한 판례는 일치하지 않는다. 판례 (1)에 있어서 뉴욕협약 및 중일무역협정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하여 일본에서 중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될 때 중국민사소송법 2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 (2)에서는 뉴욕협약 7조 1항으로부터 보아 중일무역협정 8조 4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본 항에 규정된 “그 집행이 요구되는 나라의 법률이 제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당시의 일본민사소송법 802조이고 민사소송 802조를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다. 판례 (3)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관해 뉴욕협약 5조를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다. 판례 (4)에서는 뉴욕협약 7조 1항을 “외국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에 관해 제정해야 할 제한의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중일무역협정 8조 4항에 의해 중재판정집행의 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한 당시의 민사소송법802조, 801조 중 뉴욕협약보다 제한적인 요건을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다. 판례(5)에서는 뉴욕협약 7조1항의 해석상 중일무역협정 8조 4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본조에 의한 "집행청구를 받은 나라의 법률이 결정한 조건"을 우리나라가 뉴욕협약의 가입국으로서의이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기에 뉴욕협약에서 규정한 요건을 근거로 한다고 하였다.

뉴욕협약에 가입할 때 본 협약의 규정을 국내법화 하지 않은 것은 이 협약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일본의 민사소송법 802조, 801조를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관계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판례(2)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많은 판례가 인정한 것과 같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적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Ⅲ. 일본의 신 중재법의 제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일본에서 중재제도는 명지23년(1890)에 민사소송법의 일부분으로 성립되고 평성8년(1996년)의 신민사소송법의 제정과 함께 “공지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근거로 800조로부터 802조에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이런 규정이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상의 부동한 의견 등 현재 많은 분쟁해결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 많은 면에서 완벽하지 않고 다른 면에서는 1985년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 일본법의 모범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것이기에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전자무역의 급속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재법제의 신속한 정리가 요구되었다. 2002년 3월 19일에 결정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중 “국제적동향을 보고 중재법제(국제상사중재를 포함)를 정리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계획에 쫓아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사무국에 중재검토위원회가 있고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네 번의 검토를 거친 후 5월부터 7월까지 재차 세 번의 검토를 거쳐서야 법안이 제정되어 국회에 제출하고 7월 25일에 비로소 신 “중재법”(평성 15년법률제138호)이 성립되었다. 아래 동 중재법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개고라한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에 관하여 신중재법 45조와 46조에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지 않고 원칙으로 같은 여건 및 절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뉴욕협약 5조 및 국제상사중재모델법 36조 1항을 국내법화한다는 관점으로부터 규정하였다.

우선, 예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정당하게 인정된 중재판정의 원본 혹은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 등 서면자료가 일본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영사등으로부터 증명된 번역문을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뉴욕협약 4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신중재법 46조 2항

에 의하면 중재판정서의 사본, 그 사본이 중재판정서와 일치하다는 증명문서, 중재판정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는 독일민사소송법 1064조 1항에 있는 것이고 중재계약의 존재와 효력에 관해서는 이미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하는 것으로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뉴욕협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정한 국제상사중재모델법 35조 2항의 주 (3)에 의하면 제출하는 서면서류의 요건을 완화한다 해도 모델법이 달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런 규정이 뉴욕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중재법 45조 1항은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중재판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데는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런 효력이 없을 때 중재판정승인의 거부사유인 경우는 45조 2항 1호로부터 9호까지 아홉 개 사유를 규정하였다.

그중 1호부터 7호까지는 모델법 36조 1항(a)의 (i)부터 (v) 뉴욕협약 5조 1항 36조 1항 (a) (iii)의 단서 관해서는 본조 3항에 규정을 보면 된다. 또한 8호와 9호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증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거절사유이고 모델법 36조 1항 (b) (i) (ii) 뉴욕협약 5조 2항 (a) (b)호에 대응한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필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판례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판례집 등에서 공포된 것을 간접적으로 논증한 것을 포함하여 14건을 초과하지 않고 그 중 중국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 1993년 이후 5건 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것은 판례집등에 기재된 것에 관한 것으로 실제 일본의 재판소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청구 사례는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예를들면 2002년 4월 22일의 제4회 중재검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가 있는 것은 도

오코지재에 1998년 4건, 1999년에 4건, 2000년에 1건, 2001년에 5건이고 오사카지내에는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0건, 2001년에 1건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신중재법의 제정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되고 예전의 확실이나 판례로 해석상 대립되는 점이 입법 시 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일본도 중재에 의한 섭외적인 분쟁 해결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되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된다.